

2002년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

구 본 품

행정자치부 세제담당관실

I. 머리말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법 중개정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①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법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 법인합병에 따른 중과세 대상을 조정하며, ③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여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④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개칭하며, ⑤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 ⑥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전환하고, 화재위험건축물의 범위를 소방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특수장소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재위험 및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 등이다.

본고에서 지방세 개정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과 개정이유에 대하여 대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추진일정

▲지방세법

- 2001. 7.13 ~ 8.14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2001.10.29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01.11. 5 국회제출
- 2001.12. 7 국회 본회의 의결
- 2001.12.29. 공포(법률 제6549호)

▲지방세법시행령

- 2001.10.23~11.24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2001.12.20 차관회의 의결
- 2001.12.26 국무회의 의결
- 2001.12.31 공포(대통령령 17447호)

II.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1. 공시송달 규정보완(법 제52조제1항에 제4호 신설)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 거부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 곤란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한 때 	<p style="text-align: center;"><공시송달 요건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에서는 고지서등 서류를 송달 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에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세청에서 주민세의 소득세 동시징수와 관련하여 개정요청이 있었음.

○따라서 당초에는 지방세법에서도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같이 공시송달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안을 마련하였다가 입법과정에서 공시송달의 효과를 감안하여 공시송달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2. 체납횟수 계산방법 개선(영 제26조)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1년에 3회 체납하는 경우 관허사업 제한	○1년기간 제한없이 3회이상 체납시 관허사업 제한

(2) 개정이유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상 지방세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 한해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체납자에 대한 행정상 규제조치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제

기되고

○국세(국세징수법 제9조)의 경우도 체납기간과 관계없이 3회이상 체납한 자(2000.12.29. 국세징수법 개정)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와의 형평이 맞도록 개선하였다.

※ 체납횟수 계산에 대한 적용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2.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체납분부터 적용하되,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체납분은 2002.1.1이전분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3. 환부이자계산 개선(영 제39조)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1일 1만분의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적용

(2) 개정이유

○현행 과오납금 환부이자율이 1일 1만분의 2로서 경기침체 등 하향추세에 있는 금융기관의 수신금리에도 못미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세 과오납 환부이자율을 금융기관의 수신금리에 맞추어 연동화하여 시중금리 수준에 맞추도록 규정하였으며, 환부이자에 대한 적용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2.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부이자분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 2000년 감사원 감사결과 국세와 지방세의 환부이자율이 다르므로 형평을 맞추도록 지적한 사항이며, 국세의 경우 2000년말 환부이자율을 1일 3전에서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4. 지방세 구제제도 개선(법 제78조제2항 및 제81조 삭제, 영 제75조)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제기 가능함	○현재와 같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이유

○현재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이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제도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임의적 전심제도로 개선하였다.

○이는 현행 필요적 전심제도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7조 등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1.6.28)에 따른 것이다.

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 제외기간 연장(법 제112조제3항, 제112조의2제1항 및 제138조제1항)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도시안에서 2001.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중과제외 기간을 2003.12.31.까지로 2년간 연장

(2) 개정이유

○현재는 국내기업이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유지 및 지속적 외투기업유치를 위해 중과제외 기간을 2003.12.31.까지로 2년간 연장하였다.

※ 산업자원부에서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

6.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중과세기준 면적 조정(영 제84조의3)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영업장면적이 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2) 개정이유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영업형태가 다르다고 하여 중과세 기준면적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중과세 기준 면적을 동일하게 하였다(무도유흥주점영업은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분만 중과세)

7.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물의 범위 조정(영 제75조의2)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방송중계탑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용중계탑은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전파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2) 개정이유

○한국방송공사가 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외방송과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

의 동질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교육방송은 사업의 성격상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한 국방송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사업수행과 관련한 방송중계탑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인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은 건축물, 안테나, 첩탑, 각종 시스템, 집기 등으로 구성되고 있어 과세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시설물에 대한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선통신기지국용첩탑』으로 하여 과세대상간의 형평과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8. 등록세 과세대상 정비(법 제149조)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하여 건설사업자 등록대장에 신규등록을 받을 때에는 매 1건당 11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u><삭 제></u>

(2) 개정이유

○1999.4.15.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건설업면허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한 것이다.

9.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규정 신설(영 제91조제4항)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세의 과소납부 및 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수납은행에서 등록세를 수납함에 있어서
 - 납부서중 납세자용 영수증에만 수납인을 날인하여 교부하고 과세관청 통보용과 은행 보관용 납부서는 수납처리하지 아니하고 별도 보관후 현금을 유용하거나
 - 법무사가 등기일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등록세 영수증 첨부없이 등기처리하여 법무사가 등록세를 착복하는 등
- 등록세의 횡령·유용시 이에 대한 수납사항 확인이 현재 시·도 부과징수규칙에 의하여 행정내부적으로 확인하다 보니 미확인, 확인지연 등으로 납세여부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 지방세법시행령에 확인절차·기간 등을 규정하여 확인을 의무화하여 등록세 수납에 따른 횡령 및 유용예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10.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제외대상 정비(영 제101조)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전송망사업	< 삭제 >
○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2) 개정이유

-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에서 방송관련 다음 업종은 중과제외 업종으로 규정
 - 종합유선방송사업, 유선방송사업, 프로그램공급업, 전송망사업
 - 정부가 20%이상 출자법인(KBS, MBC, iTV 등)
- 2000.1.12. 통합방송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종전의 4개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방송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내용도 세분화함
- 따라서 방송법개정에 따라 세분화된 사업내용에 맞도록 중과대상을 정비·보완한 것이다.

※ 통합 방송법

<종 전>		<현 행>	
◦ 종합유선방송법	· 종합유선방송국 · 프로그램공급업 · 전송망사업	◦ 방송법 (제2조)	· 방송사업 - 지상파방송사업 - <u>종합유선방송사업</u> - 위성방송사업 - <u>방송채널사용사업</u> · <u>전송망사업</u>
◦ 유선방송관리법	· 유선방송사업 (중계·음악)		· <u>중계유선방송사업</u> · <u>음악유선방송사업</u> · <u>전광판방송사업</u>
◦ 방 송 법	· 방송국, 방송법인		※ 밑줄친 사업은 현재도 중과 제외 대상 사업임
◦ 한국방송공사법	· 한국방송공사		

11. 대도시내 법인합병시 중과제외 규정 보완(영 제102조제7항신설)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p>○ 대도시내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대도시내의 기존법인이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p> <p>※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p>

(2) 개정이유

- 법인의 합병과 분할은 기존법인을 그대로 2개 법인을 합치거나 1개 법인을 2개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고
 -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법인합병에 대한 중과세제도 운영이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동일한 사안이라도
 - 기존법인 명의로 합병(흡수합병)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 ※ 합병의 주체가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과제외
 - 신설법인 명의로 합병(신설합병)하거나 새로운 제3의 명의로 합병하는 경우는 중과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고
- 합병과 유사한 성격의 분할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법인신설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2001.3.28)하였으나 합병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 법인합병의 경우 대도시내에서 5년이 경과한 법인(중과제외 대상 법인)간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대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 대도시내에서 5년이 경과한 법인과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간의 합병시에는 자산의 평가액 또는 장부가액에 의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는 중과세 하도록 한 것이다.

12. 경주·마권세의 명칭 변경 및 과세대상 추가(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 영 제105조의2)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세목 : 경주·마권세 ○과세대상 : 경마, 경정, 경륜	○세목 : 레저세로 변경 ○과세대상 : 현행 과세대상 외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추가

(2) 개정이유

○현행 세목 경주·마권세는 종전의 마권세이던 것을 경륜·경정을 과세대상에 추가할 때 개정한 것이나, 소싸움 등 새로운 과세대상을 추가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개선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하여 개설예정인 소싸움 등의 과세대상 추가에 대비하여 과세대상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각종 競馬, 競犬 등의 오락에 대해 과세하고 있고, 2002. 5 경북 청도군에 소싸움장을 개설할 예정임.

13. 도·농복합형태 시의 면허세제도 개선(법 제164조제2항)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p><세율적용>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면허세 세율은 동지역은 시로,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아 적용</p>	<p><조례로 세율적용 조정> 해당지역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군지역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p>

(2) 개정이유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 중 시청소재지가 종전의 군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등 지역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군지역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 경남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통합하여 거제시가 되면서, 시청이 구장승포 시에서 구거제읍지역으로 이전되자 구장승포 동지역 주민의 불만발생 등

※ 면허세율 : 시지역 5,000원~30,000원, 군지역 3,000~18,000원

14.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정(법 제189조)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p>○과세기준일 : 5월 1일 ○납기 : 6월 16일 ~ 6월 30일</p>	<p>○과세기준일 : 6월 1일 ○납기 : 7월 16일 ~ 7월 31일</p>

(2) 개정이유

○과세기준일이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로 되어 있어 주택 등의 매매시 토지 및 건축물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등 납세자 혼란 및 업무 연계성의 결여로 부동산에 대한 과세기준일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6월 1일로 통일하고,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6. 16 ~ 6. 30로 중복되어 업무량 증가 및 주민의 납세 부담이 가중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재산세의 납기를 7월로 1개월간 늦추어 조정하였다.

※ 민주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시 기초자치단체협의회(2000. 6월)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2000.10월) 등에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

15. 상속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규정보완(법 제196조의3)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상속개시된 자동차의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2)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상 상속자동차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전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납세의무자 지정에 문제점 발생하므로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당초에는 주된 상속자의 기준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규정과 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위임하고자 하였으나, 입법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규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에 규정한 것이다.

<적용례 :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6.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조정(영 제194조의15)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p>○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p> <p><신 설></p> <p><신 설></p>	<p>○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p> <p>○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p> <p>○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p>

(2) 개정이유

① 농지(전·답·과수원)

○교통수단의 발달로 실제 자경을 하고 있는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작거리(20km) 제한으로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 농지법(96.1.1.시행)에는 자경여부 거리제한 판단규정 없음

○농지(전·답·과수원)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여러 가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저율(0.1%)로 분리과세하면서

-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수단의 발달로 20km이상의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영농이 가능하며, 농지관련법에서도 농지소유 조건으로 규정하였던 농지로부터의 20km이내 거주요건을 '95년에 폐지(95.12.22)하였고,

○실제 농지가 농업생산에 이용되고 있다면 직접경작이나 임차경작으로 구분하여 과세를 달리하기보다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모두 분리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모든 농지를 분리과세로 전환하되, 도시계획지역내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내 농지의 경우는 도시계획시행으로 지가상승은 물론 농지의 전용 등이 용이하므로 현행과 같이 종합합산 과세가 되도록 하였다.

②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소유 토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조합(중앙회·자회사 포함)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등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와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하는 토지는

○부실자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형평상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개요>

- 설립근거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관련법률
- 주요업무(§30)
 - 조합(중앙회, 자회사 포함)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
 -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취득
 - 담보부동산의 가치의 보전·증대를 위한 부동산의 매입·대여·개발 처분
 -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의 인수
 -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조합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
 - 조합 또는 중앙회가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자산의 공매 등

16. 농업소득세의 신고기간 및 확정기간 변경(법 제208조 및 제209조, 영 제155조)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신고기한 : 1월 31일까지	○ 신고기한 : 5월 31일까지
○ 확정기한 : 2월말까지	○ 확정기한 : 6월 30일까지
○ 보통징수 : 3.16 ~ 3.31	○ 보통징수 : 7월 16일 ~7월 31일

(2) 개정이유

○농업소득세 필요경비인 종업원의 인건비 등의 정산이 2월말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종전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던 시설재배작물이 금년부터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소득세과세기 5월말까지 신고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농업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을 소득세(5월말)와 일치시켜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농업소득세의 확정결정기간도 6월말로 변경하고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시행시기는 2001년도분 농업소득세부터 적용토록 부칙 제4조에 규정하였다.

17. 공동시설세의 세율 및 화재위험건축물 조정

①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조정(법 제240조)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일반건축물 및 선박 : 0.06~0.16%	○현행세율은 그대로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는 표준세율제도로 개선

(2) 개정이유

○현재는 공동시설세의 경우 법정세율대로만 과세할 수 있으나,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조례로 50% 범위안에서 자율·결정토록 한 것이다.

※ 현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도 표준세율로 되어 있음.

○이 경우 시·도지사가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정하게 되므로 무리한 세율인상은 곤란하며,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그 재원은 소방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그 혜택을 받게되는 납세자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2001년도 소방예산은 1조 177억원이나, 소방공동시설세로 충당되는 금액은 3,517억원(34.5%)에 불과하며, 소방장비의 현대화 및 인력의 증원 등으로 소방재원을 확충할 필요성

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② 소방공동시설세의 종과세 대상인 화재위험건축물의 범위 조정(영 제199조의2)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p>○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유장·주유소·공장·영업용 창고와 그 부속시설 2. 가연성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용 건축물과 옥외가스충전시설 3.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설 4. 호텔 및 여관 5.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용 건축물(33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6. 극장·영화관 7. 4층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 등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p>○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4층(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이상 건축물과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영업용 창고에 한한다)과 그 부속시설 2 판매시설 3. 숙박시설(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4. 위락시설(무도장 및 무도학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유흥주점영업용 건축물중 33제곱미터(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5.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중 극장, 영화관, 예식장 6. 운수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용 건축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7. 근린생활시설중 학원·비디오물감상실·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의료시설, 위생등 관련시설중 장례식장

(2) 개정이유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범위조정은 과세대상확대 보다는 현행 종과제도의 근거를 소방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특수장소에 근거를 두면서 같은 시설중 종과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와 화재위험 및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을 정비·보완하고

○소방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특수장소가 건축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면적 등을 감

안하여 다중이용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현행 소방공동시설의 중과세 대상인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범위를 영세업종 및 중과 대상간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중과기준을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 200㎡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소방법시행령 별표1 특수장소(제3조관련)

① 근린생활시설

2.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기원·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단란주점
9. 당구장·성인용 및 청소년용컴퓨터게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것
10. 사진관·표구점·학원(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을 제외한다)·독서실·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② 위락시설

1. 유흥주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2. 특수목욕장
3. 당구장·유기장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5. 무도장 및 무도학원

③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1. 공연장 :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④ 판매시설

1. 도매시장·백화점
2.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규모소매점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3. 상점 : 동일 건축물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9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⑤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 호텔·여관·여인숙·모텔
2.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가족호텔·국민호텔·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한국형호텔·유스호스텔
3.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⑦ 의료시설

1. 일반병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
2. 격리병원 : 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⑬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근린생활시설 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공해공장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2. 일반공장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⑭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창고(냉동창고를 포함한다)
2. 하역장

⑮ 운수자동차관련시설

1.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5. 주차용 건축물 및 차고

⑯ 위생등관련시설

7. 장례식장

⑰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 위험물제조소등
2.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가스제조시설

-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가스저장시설

-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다. 가스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18. 담배소비세 환부에 관한 규정 보완(법 제233조의9)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p><환부사유></p> <p>○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훼손된 경우</p> <p>○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품질불량등의 사유로 반입된 경우</p>	<p><환부사유 추가></p> <p>○판매부진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담배가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 환부대상에 추가</p>

(2) 개정이유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외국산 담배를 재수출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환부하지 아니하는 규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2001.4.26)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에도 환부대상이 된다.

19. 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법 제268조)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p>○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반납한 자동차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자동차등)으로 교환받은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p>	<p>○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반납한 자동차등과 동일한 종류의 <u>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u>으로 교환받은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p>

(2) 개정이유

○소비자가 구입한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로 교환 받는 경우 감면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자동차등』을 포함하도록 한 부분이

○감면범위를 오히려 축소해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로 교환 받는 경우 모두 감면대상이 되도록 명확히 하였다.

※ 현재는 그랜저를 구입한 후 하자로 인하여 소나타로 교환 받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범위(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안에서 교환 받으면 모두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20. ASEM 회의장용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면제시한 연장(법 제280조제6항)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ASEM 회의장용 건축물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면제	○면제 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2) 개정이유

○2000년 10월에 개최된 「제3회 아시아·유럽정상회담」 용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면제시한이 2001.12.31.까지로서

○사실상의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도설치공사 관계로 준공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2001.12.31.까지 등기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당초 면제해 주기로 한 취지를 살려 면제시한을 1년간 연장하였다.

20. 면허세 과세대상 정비·보완(별표, 면허종별)

① 과세대상 추가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신설>	환경오염방지시설업(3종)
<신설>	대기오염배출시설설치(5종)
<신설>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2종)
	- 일반소방시설공사업(3종)

(2) 개정이유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소방시설공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면허세의 누락 과세대상이므로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면서 종별조정은

- 대기오염방지시설업은 제3종인 폐기물처리업·오수처리시설업과 유사한 업종인 점을 감안하여 제3종으로 신설하고,
-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하는 제5종인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및 수질오염특정시설의 설치와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제5종으로 신설하며,
-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공사업(자본금 : 법인 1억원이상, 개인 2억원이상), 일반공사업(자본금 : 법인 5천만원이상, 개인 1억원이상)으로 구분되므로(소방법시행령 별표5) 전문소방시설 공사업은 제2종으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제3종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② 과세대상 정비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3종 132호	무선국 개설, 다만, 준공검사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 제외	무선국 개설(아마추어무선국을 제외한다). 다만, 준공검사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 제외
3종 123호	총포소지. 다만 업종에 한한다.	총포소지(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총포를 제외한다). 다만, 업종에 한한다.
5종 6호	총포소지. 다만 업종 및 권총을 제외한다.	총포소지(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총포를 제외한다). 다만, 업종에 한한다.
4종 114호	시체운반업	<삭 제>
2종 88호	석유판매업. 다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및 특수판매소에 한한다.	이동판매소 삭제

(2) 개정이유

○아마추어 무선국은 수해시 이재민구호 및 재난·구조 등 비상시 통신주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홍보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과세제외가 필요하고

- ※ 한국아마추어무선국협회에서 면허세 면제요청 : 2001.1.29
-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총포는 취미·여가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위선양 등 사격선수용에 사용되므로 면허세 과세제외가 필요하며
- 시체운반업 및 이동판매소에 대한 면허는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삭제하였다.

③ 기타 과세대상 보완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2종 110호	축산폐수배출시설	제5종 축산폐수배출시설
1종 131호	보험업(보험대리점의 설치를 포함한다)	보험업

(2) 개정이유

-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축산업자가 수자원 보호등을 위하여 축사의 오폐수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 농수축산 보호측면과 현재 제5종인 폐수배출시설과의 과세형평상 제2종에서 제5종으로 하향조정 필요
- ※ 농림부·보건복지부 및 시도 건의 사항임
- 보험업은 보험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험사업자이외 개인의 보험대리점설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22. 사업소세 비과세대상 추가(영 제209조)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2) 개정이유

- 현행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중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국립암센터 등 공

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를 치료하는 비영리성격상 비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23.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 신고납부제도 개선(규칙 제48조)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 자동차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 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수기고지서(별지 제49호의3서식)를 이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2)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소지와 다른 동일 시·도내의 시·군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므로 2000년말 등록제도 주소지와 다른 등록지 시·군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으므로

○ 취득제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소지와 다른 시·군에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동일 시·도내에서 자동차 이전·변경 등록가능

24. 기타 용어정리 등

- 취득의 개념에 “개수”를 포함(법 제104조제8호)
-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174조)
- 담배소비세 법문 중 : 환급 → 환부(법 제233조의7, 제233조의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2항 및 제3항 → 제61조제3항(영 제11조제3항)
- 나환자치료보호시설 →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대한나관리협회 → 한국한센복지협회(영 제79조제1항제4호)
-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일 → 사용승인서교부일(영 제86조의3)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유치촉진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영

제101조제1항제3호)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영 제101조제1항제14호)
- 주택사업공제조합 → 대한주택보증회사(영 제101조제1항제26호)
- 천연보호림 → 산림유전자원보호림(영 제194조의8)
- 보세장치장용 토지 → 보세창고용 토지(영 제194조의14)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업·농촌기본법(영 제194조의15제1항제2호나목)
- 하천법 제44조 → 제10조(영 제194조의15제1항제5호사목)
- 염관리법(염전폐지신고) → 삭제(영 제194조의15제4항제3호)
-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영 제194조의15제4항제5호)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5 → 제70조(영 제194조의15제4항제13호)
- 특정다목적댐법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영 제194조의15제4항제21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어촌정비법(영 제216조)

Ⅲ. 맺음말

2001년도 지방세법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건)사항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였고,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여 향후 소싸움이나 개싸움 등에 대하여도 레저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목을 『레저세』로 변경하게 된 것은 당초 입법예고시 『오락세』로 협의 를 하였으나, 사행적 의미가 있어 부적합하다는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어 『레저 세』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이며, 『레저』라는 용어는 외래어이나, 우리나라 현행 법령(수상레저안전법, 관광진흥법, 지방세법)에서도 법률용어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등 국어화 되어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공시송달 요건을 국세기본법과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에 규정한 것 과 상속자동차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주된 상속자에게 지우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규정과 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에 규정한 것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안으로 반영된 것이므로 향후 법개정시 상속재 산에 대한 재산세(법 제182조제6항)와 종합토지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2호)의 납세의무 규정도 이와 같이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방세 구제제도를 필요적 전심제도에서 임의적 전심제도로 개선하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현행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를 필요적으로 전치하여서 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적으로 전치시키려면 사법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것임

로 행정심판법, 국세기본법 등 사법절차가 상당한 정도로 준용되는 법률을 참조하여 개선하면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할 수 있는 것인데도 임의적 전심제도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현재의 기구와 인력으로서 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으므로 앞으로 필요적 전심제도로 개선하려면 기구 및 인력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